

창원지방법원 2020. 3. 4 선고 2019가단12513 판결 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B

판 결선고 2020. 3. 4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98. 6. 27.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접수 제4166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원인: 별지 기재와 같다.
2. 무변론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)

판사 예지희

별지